

붙임

세부항목별 집행 기준

항목		내용
기술이전	기준	· 2026년 1월 1일 이후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회수 지원기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, 이에 따라 지급한 정액기술료
	유의 사항	· 기술이전은 협약기간 내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인정함 · 기술이전 대상은 회수지원기구가 보유한 특허에 한하며, 타 기관 또는 개인 간 기술이전은 인정되지 않음
IP 밸류업 고도화	기준	·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 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, 특허)의 출원·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· 협약 체결 이후 기술사업화와 직접 관련된 특허 출원·등록 비용 집행 가능(출원비, 등록비, 선행기술조사비, 우선심사비 등) · 출원인(최종권리권자)은 선정기업(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)이어야 함
	유의 사항	·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(선행기술조사비, 우선심사비, 출원·등록비 등)은 집행 불가 ·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는 집행 불가
IP 가치평가	기준	· 기술사업화 아이템과 연계된 지식재산권(IP)에 대한 기술성, 권리성, 시장성 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 비용 · 기업(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) 보유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지원
	유의 사항	· 기술사업화 제품과 해당 IP의 연관성은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
시제품제작, 프로그램개발	기준	· 제품 설계 및 제조와 관련하여 성능검토 및 품질확보를 위한 외주용역 비용
	유의 사항	· 외주용역의 과업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·종목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집행 불가 · 프로그램 개발 등 무형의 시제품도 포함하며, 담당자의 현장 검수를 필수로 함 · 선정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, 손해배상금, 지체상금 등은 집행 불가
품질/제품 인증 및 분석	기준	· 제품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성능 검증, 관련 표준·기술수준 충족을 위한 인증 및 시험분석 비용 · 국가공인 시험·분석기관, 연구소, 대학 연구센터 등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- (국내) KC, KS, GS 등 품질 및 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 · 사업계획서상 결과물과 관련된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
	유의 사항	· 인증 완료 결과물이 협약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집행 불가 · 인증과 컨설팅이 병행되는 경우,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 수행자료(일지 등) 제출 필수

항목		내용
도입기술 홍보물/홈페이지 제작	기준	·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 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활동 비용 - 집행 예시 :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제작비, 카탈로그 제작비 등 · 외주용역 수행 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분할지급(선금금, 잔금) 가능
	유의 사항	·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, 유니폼 제작, 기프트콘 등은 집행 불가
해외인증 획득	기준	·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규격 및 국가별 인증 획득 비용 · 국가공인 시험·분석기관, 연구소, 대학 연구센터 등을 활용한 시험분석비 - (해외) CE, FCC, CCC 등 품질 및 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 · 사업계획서상 결과물과 관련된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
	유의 사항	· 인증 완료 결과물이 협약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집행 불가 · 인증과 컨설팅이 병행되는 경우,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 수행자료(일지 등) 제출 필수
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	기준	· 제품디자인: 기획, 아이디어 도출, 2D·3D 시안 개발 및 최종안 제작 · 시각디자인: CI 및 BI 개발 등 · 포장디자인: 패키지 기획, 시안 개발 등 · 사업계획서 상 적용 제품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에 한하여 집행 가능
	유의 사항	· 외주용역의 과업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·종목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집행 불가 · 선정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, 손해배상금, 지체상금 등은 집행 불가 · 단순 아이디어 도출 단계의 비용은 집행 불가
국내외 전시 (박람회) 참가	기준	· 사업화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,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
	유의 사항	· 장치비 등은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지정 대행사에 납부하는 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, 별도 외주용역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· 물품 운송비는 집행 불가 · 해외 전시 참가의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